부천우체국 공고 제2017-33호

2017년도 제 11회 무기계약직근로자(상시계약집배원) 선발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실기·면접시험 계획

2017년도 제 11회 무기계약직근로자(상시계약집배원)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실기·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 10. 16.

부천우체국장

1.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

직종	응시번호	합격여부	비 고
상시계약 집배원	부천 101 부천 102 부천 103 부천 104 부천 105 부천 106 부천 107	합격	· 합격자는 **2017. 10. 17.(화) 09:00까지 부천우체국 4층 대회의실**로 입실 · 복장 : 단정한 옷차림으로 하되 실기 시험 가능한 옷차림 · 준비사항 : **응시표 및 신분증**

2. 실기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

o 실기일시 및 면접일시 : **2017.10.17.(화) 09:00~ / 면접 2017.10.17.(화) 10:00~**

o 면접시험 진행 : **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실시**

o 면접장소 : 부천우체국 4층 소회의실(4층 대회의실에서 대기)

o 응시자 준비사항 : 응시표 및 신분증

3. 응시자 유의사항

o **실기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부천우체국 4층 대회의실에서 대기**

o 응시자는 붙임의 실기시험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람

o 기타 실기 및 면접에 대한 문의사항은 부천우체국 지원과(032-310-7154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 5】

실기시험 기준표

- 체력 검정(3종목): 팔굽혀펴기, 윗몸일으키기, 20kg 소포상자 이동하기

성별/종목/연령대		합격	불합격
남자	윗몸 일으키기 **(기준시간: 1분)**	25 이상	24 이하
	팔굽혀 펴기 **(기준시간: 1분)**	20 이상	19 이하
	소포상자 이동하기(20kg) **(기준시간: 40초 10m씩 왕복)**	40초 이내	40초 초과
여자	윗몸 일으키기 **(기준시간: 1분)**	10 이상	9 이하
	팔굽혀 펴기 **(기준시간: 1분)**	10 이상	9 이하
	소포상자 이동하기(20kg) **(기준시간: 1분 10m씩 왕복)**	1분 이내	1분 초과

【붙임 6】

실기시험 방법

종 목	측정방법
윗몸 일으키기	- 시험관의 “준비” 구령에 따라,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30cm 간격으로 벌리고 무릎은 직각으로 굽혀 세우고 두손은 머리 뒤로 깍지껴 잡는다. - 시험관의 “시작” 구령과 함께 복근력만을 이용 몸을 위로 일으켜 굽힌다. -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으면 다시 누운 상태로 돌아간다. - 누운 자세에서는 깍지 낀 양손, 어깨 등이 반드시 메트와 접촉되어야만 한다. -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. * 부정확한 동작 : 깍지를 풀거나,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 등의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함
팔굽혀 펴기	**[남 자]** - 시험관의 “준비” 구령에 따라,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려 손끝이 앞으로 향한 상태에서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고, 머리, 어깨, 허리, 엉덩이,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. - 시험관의 “시작” 구령과 함께 팔이 90도이상 굽혀 가슴이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 굽혔다가 다시 완전히 편 상태를 1회로 간주한다. -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. **[여 자]** - 시험관의 “준비” 구령에 따라, 양팔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마루에 대고 엎드려 팔을 바닥과 직각이 되도록 하고, 머리, 어깨,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. - 시험관의 “시작” 구령과 함께 팔이 90도이상 굽혀 가슴이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 굽혔다가 다시 완전히 편 상태를 1회로 간주한다. -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.
소포상자 이동하기	- 시험관의 “준비” 구령에 따라, 출발선의 소포상자 앞에 선다. - 시험관의 “시작” 구령과 함께 두 팔로 20kg 상당의 소포상자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10m를 이동 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는다. - 도착 장소에 준비된 20kg 상당의 소포상자를 어깨에 메고 빠른 걸음으로 반대편으로 10m를 이동한 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는다. * 몸놀림과 소포 취급 태도를 통해 소포 등 우편물 취급의 가부 여부를 판단

※ 응시종목 중 2종목 이상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